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85

발의연월일: 2023. 2. 22.

발 의 자:조은희・박정하・권성동

조명희 · 서일준 · 이채익

김용판 • 윤두현 • 박성민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 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의 관할 구역 안에"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로, "광역시나 도"를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②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 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 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 ----- 광역시·도 또는 특별 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도----둔다. <단서 신설> ---.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⑤ ----- 관할 구역 안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 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는 특 로 법률로 정한다. 별자치도----.